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71
----------	-------

제출년월일 : 2008 . 9 .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임대주택법」 [2008. 3. 21 법률 제8966호] 및 동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 전부 개정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법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분쟁발생시 원만히 협의·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나. 기능(안 제4조)

-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 제18조의2”를 “「임대주택법」 제33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5.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

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주 택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주택과장 여 규 만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택담당 장 경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재 현 860-240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 제 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임대주택법」 제33조----- ----- ----- -----</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 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하되,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임대사업자의 임·직원은 각각 1인에 한한다.</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3.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중 임대주택 관리 업무 담당과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현 행	개 정 안
<p>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 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임기는 당해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 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p>	<p>4. <u>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u></p> <p>5. <u>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u></p> <p>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u></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임대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제4조(기능)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u></p>